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(안)

2020. 1.

국 토 교 통 부

1. 개정이유

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·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버스 기준을 마련하고, 국제 표준화 기구(ISO)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허용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안전띠 성능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휠체어 탑승공간·승강구·고정장치 및 승강장치 등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기준 마련 (안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1 신설)
- 나.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가 국제 표준화 기구(ISO)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함(「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」 제3항 나목 3) 개정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기준) 법 제6조제2항제5호
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2조제1항 중 “별표 1”을 “별표 1의2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별표 1의2”를 “별표 1의3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, “별표 1”을 “별표 1의2”로 한다.

“별표 1의2”를 “별표 1의3”으로 하고, 제3호나목3) 중 “이와 동등 이상의
기준”을 “KS P ISO 10542-1 표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기준(제1조의2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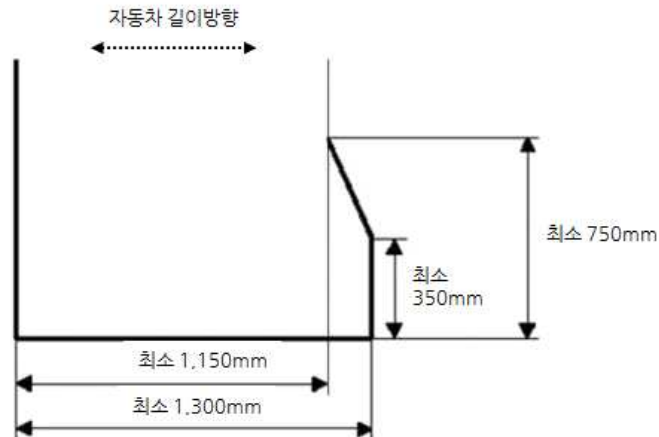
1. 적용범위

본 규정은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휠체어 탑승공간, 휠체어 고정장치, 승강장치 등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.

2. 설치기준

가. 휠체어 탑승공간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.

- 1) 휠체어는 자동차 길이방향과 평행하고, 자동차 내에서 앞보기로 착석할 수 있어야 한다.
- 2) 최소 750mm×1,300mm 면적을 가지는 수평면($\pm 4.5^\circ$)이어야 한다.
- 3) [그림 1]의 휠체어 탑승공간 내에는 휠체어 고정장치,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등 휠체어 탑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만 설치해야 한다.



[그림 1] 휠체어 탑승공간 측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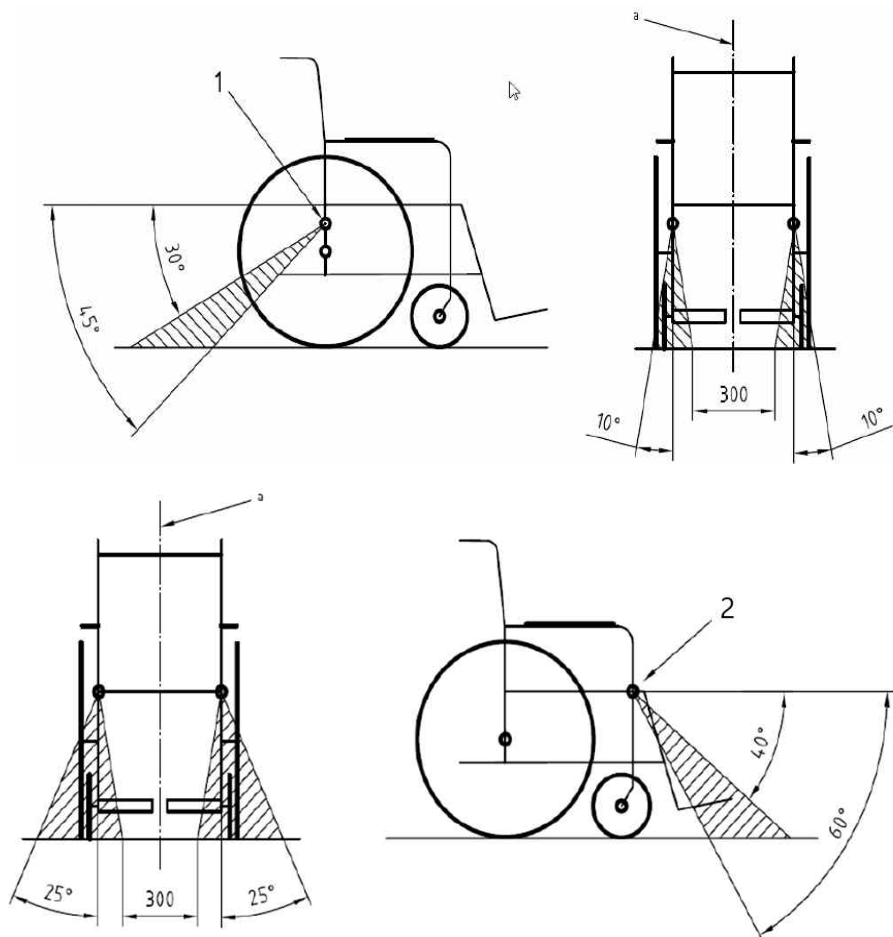
나.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승강구는 높이 1,400mm, 폭 900mm 이상이어야 한다.

다. 휠체어 고정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.

- 1) 휠체어 고정장치는 KS P ISO 10542-1 표준을 만족하는 4점식 스트랩식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2) 휠체어 탑승공간과 동일한 바닥면 또는 동일한 바닥면의 연장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.
- 3) 휠체어 고정장치는 표준휠체어에 설치하였을 때 다음의 가) 또는 나)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.
가) 휠체어 고정장치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설치위치

나) KS P ISO 10542-1 표준에 규정된 설치위치

- (1) 후방 고정 스트랩의 측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과 평행하고, 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$30^{\circ} \sim 45^{\circ}$ 이내이어야 한다.
- (2) 전방 고정 스트랩의 측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과 평행하고, 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$40^{\circ} \sim 60^{\circ}$ 이내이어야 한다.
- (3) 후방 고정 스트랩의 후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기준면과 평행하고, 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$\pm 10^{\circ}$ 이내이어야 한다.
- (4) 전방 고정 스트랩의 전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기준면과 평행하고, 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$\pm 25^{\circ}$ 안에 있어야 한다.



[그림 2]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범위(KS P ISO 10542-1)

라.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 및 그 부착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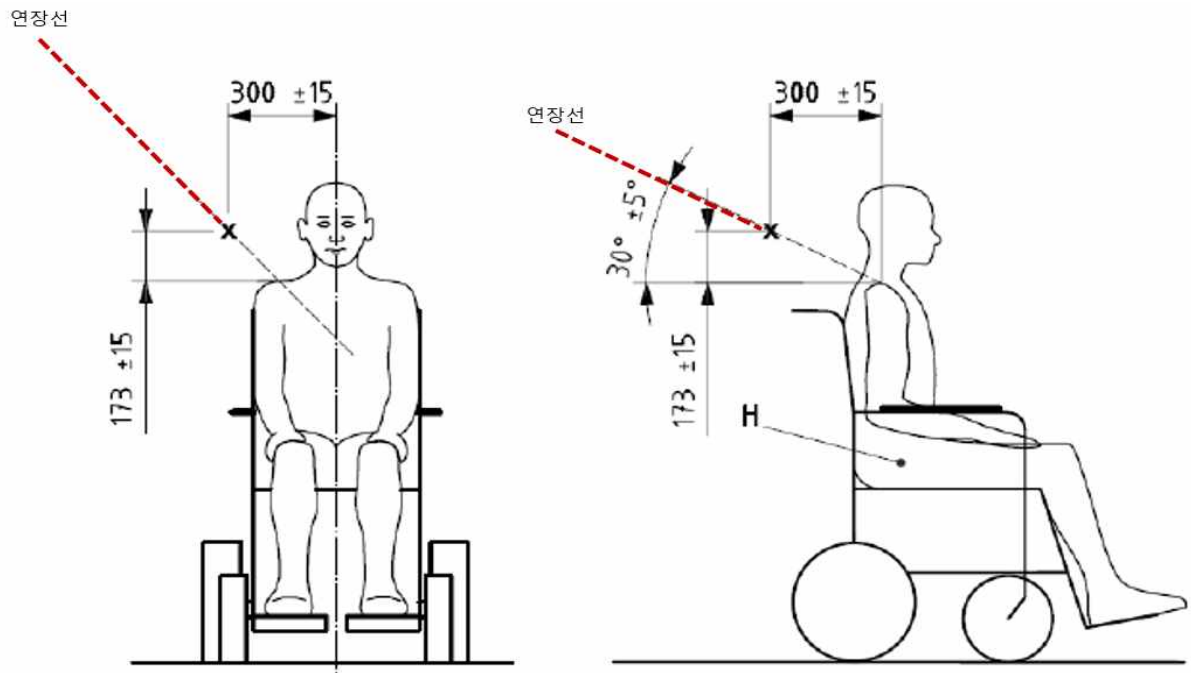
- 1)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는 KS P ISO 10542-1 표준을 만족하는 2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2)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의 부착장치는 다음의 가) 또는 나)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.

다.

가)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설치위치

나) KS P ISO 10542-1 표준에 규정된 설치위치

- (1) 골반 구속장치 부착장치의 위치는 표준휠체어에 착석한 인체모형이 착용했을 때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과 평행하고, 착석기준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의 수평방향 하단으로 $30^{\circ} \sim 75^{\circ}$ 이내이어야 한다.
- (2) 어깨 구속장치 부착장치의 위치는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에서 $1,100\text{mm}$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, 표준휠체어에 착석한 인체모형의 어깨보다 $300\text{mm} \pm 15\text{mm}$ 만큼 뒤, $173\text{mm} \pm 15\text{mm}$ 만큼 위에 있으며, 부착장치와 인체모형의 어깨는 $30^{\circ} \pm 5^{\circ}$ 의 측면투영각을 가지고, 인체모형 중심선에서 $300\text{mm} \pm 15\text{mm}$ 만큼 측방에 있어야 한다. 다만, 차량의 구조상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체모형의 어깨와 어깨 구속장치 부착장치의 연장선상에 설치할 수 있다. [그림 3 참조]



[그림 3] 휠체어 탑승객 구속장치 설치범위(KS P ISO 10542-1)

마. 휠체어 승강장치는 다음의 설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.

- 1) 휠체어 승강장치 바닥면의 크기는 길이 $1,200\text{mm}$, 폭 800mm 이상일 것
- 2) 휠체어 승강장치는 시각 및 청각 경고장치를 설치 할 것
- 3) 휠체어 승강장치는 구름방지장치를 설치 할 것
- 4) 휠체어 승강장치는 난간을 설치하여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 할 것
- 5) 휠체어 승강장치의 사용자 설명서를 승강장치 주위에 설치 할 것
- 6) 휠체어 전동 승강장치의 조종장치는 휠체어 승강장치 주위에 있어야 하고, 휠체어 전동 승강장치의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는 전원장치는 운전석 주위에 설치 할 것.
- 7) 휠체어 전동 승강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조종장치의 조작을 중단하면 즉시 작동이 멈춰야 하고, 어느 방향으로든 작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일 것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
제1조의2(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기준)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	제1조의2(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기준)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제2조(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)	제2조(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)
①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<u>별표 1과</u> 같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의2와</u> 같다.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6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) ① ~ ② (생략)	제6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승강설비,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<u>별표 1의2와</u> 같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의3과</u> ----